KOSHA GUIDE

C - 84 - 2013

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.

- (6) 트러스거더를 매단 상태에서 결속 상태 및 와이어로프 설치 각도 등의 적 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(7) 트러스거더 거치 및 유도하거나 미세조정 시 유도로프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8) 트러스거더 거치 후 반드시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9) 로프 체결방법은 트러스거더 인양은 4줄 걸이로 하여야 하며, 부속 자재의 경우에는 2줄 걸이로 하여야 한다.
- (10) 트러스거더 연결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달비계는 견고한 구조여야 하며,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, 볼트 등의 부재 낙하방지를 위해 바닥에 합판 등을 이용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트러스거더 하부의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에서 미리 설치하고, 지상 설치가 불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의 추락재 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2) 트러스거더 상부에는 안전대 걸이시설,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재 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8.5 고소 작업차 작업(필요시)

- (1) 사전에 고소 작업차의 종류 및 능력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,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 지휘자가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 시작 전에 제동장치, 조작장치 및 작업장치의 기능에 대해 점검을 실